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미회수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삼척시

내 용

보장기관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5조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 지침 「자활사업안내」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며,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있다.

같은 법 제18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자활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,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고,

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르면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은 자활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 지침 「자활사업안내」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원의 자활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, 매출적립금, 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그런데 삼척시에서는 아래 [표]와 같이 ‘○○○○사업단(사회서비스형)’이 해체된 후에도 매출적립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.

[표]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미회수 현황

(단위 : 원)

시/군	자활센터명	사업단명	사업단 승인일	사업단 폐지일	매출적립금	매출적립금 회수여부
삼척시	○○○○자활센터	○○○○사업단	2013-09-01	2015-12-31	17,451,884	미회수

조치할 사항 삼척시장은

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매출적립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